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4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복기왕 · 전용기 · 한정애
김우영 · 이상식 · 이재관
조계원 · 임호선 · 위성곤
정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기”를 “관리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물을 보호하기”를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로,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협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동물학대 방지를”을 “복지 증진을”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2. 은퇴 봉사동물의 분양 지원
3. 그 밖에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구조·보호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단체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제69조제4항”을 “제69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으로, “변경허가률”을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률”로 한다.

제97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항제7호 중 “제37조제4항을”을 “제37조제4항 또는 제37조의
2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제37조제2항에”를 “제37조
제2항 또는 제37조의2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u>관리하기</u>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 ----- <u>관리하고</u> <u>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u>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모든 국민은 <u>동물을 보호하기</u>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u>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u> 한다.	⑥ ----- <u>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을</u> ----- ----- <u>협조하여야</u> -----.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u>동물학대 방지를</u>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 ----- ----- <u>복지 증진을</u> ----- -----.
<u><신 설></u>	<u>제16조의2(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u>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

<신 설>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관리
2. 은퇴 봉사동물의 분양 지원
3. 그 밖에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동물보호단체 등의 신고)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구조·보호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

	<u>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u> <u>④ 동물보호단체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u>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u> <u>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① -----

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69조제4항 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제69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변
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8. (생 략) ⑤·⑥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u>제37조제4항을</u>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8. ~ 1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7. <u>제37조제2항에</u>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 26. (생 략) ④·⑤ (생 략)	<u>2의2.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u> 3. ~ 8.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7조제4항 또는 제37조의2제4항을</u>----- ----- ----- ----- 8. ~ 18. (현행과 같음) ③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7조제2항 또는 제37조의2제2항에</u>----- ----- ----- ----- 8. ~ 2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	--